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48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의자 : 고민정 · 김문수 · 이기현

김준혁 · 허영 · 정을호

박지원 · 전용기 · 정혜경

윤종오 · 김한규 · 서미화

송옥주 · 허성무 · 박용갑

이용선 · 전종덕 · 조인철

이용우 · 양부남 · 정진욱

황명선 · 문금주 · 박희승

오세희 · 이광희 · 임미애

이병진 · 문정복 · 손술

의원(30인)

제안이유

2025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2025.4 기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열악한 근로환경,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 라.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안 제6조).
- 마.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생”을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급식종사자”라 함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학교급식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영양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영

양교사, 학교급식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기준”을 “및 인력 기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위하여”를 “위생적 ·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 업무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학교에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⑥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 ·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급식시설”을 “학생과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급식시설”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식재료 구매 · 세척 · 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p> <p>-----</p> <p>-----</p> <p><u>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u></p> <p>-----</p> <p>-----.</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학교급식종사자”라 함은 <u>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학교급식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u></p>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u></p>	<p>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p> <p>-<u>영양교육-----</u></p> <p>-----</p> <p>-----</p> <p>-----</p> <p>--.</p>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영양교사, 학교급식종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인력 기준 등

제6조(급식시설 · 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급식시설 · 설비) ① -----

--위생적 ·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하여-----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 업무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학교에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⑥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

	<p><u>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8)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p>
<p>제8조(경비부담 등) ① ~ ③ (생략)</p>	<p>제8조(경비부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u>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④ ----- ----- ----- ----- ----- ----- <u>학생과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급식시설</u> ----- ----- ----- ----- ----- -----.</p>
<p>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생략)</p>	<p>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u>②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u></p>

	<u>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